

#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2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3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3.

라. 상정일자 : 2010. 4. 5.(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고자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포상금 지급대상은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.(안 제2조)
- 포상금 지급기준은 1건당 5만원,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, 연간 300만원으로 한정함.(안 제4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#### ○ 동 제정조례안은

-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

#### ○ 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신고자는 인천광역시 주민으로 한정하고, 포상금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하였으며(안 제2조, 제3조)
- 포상금 지급 기준에는 전문적인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제를 정하고(안 제4조)
- 안 제6조에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없어 신고자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함.
- 또한,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한 제반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# < 질 의 >

#### ○ 윤지상, 김소림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희 위원

- 이 조례는 비상구 확보 문제로 인한 건축 등 시민생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, 제2조 제1항 제5호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“시장이 정하는 사항”은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,

제3조 신고방법 등에서 대상을 인천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.

- 관공서에서 민원 처리시 능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포상금 지급의 방법 등 시민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심을 혼란시킴.
- 조례 제안이유에 비상구 확보 관련하여 몇층부터 비상구 설치하는지, 화재 발생시 완강기를 사용하는 것은 4~5층이지, 2~3층은 이용횟수가 미약하므로 현실에 맞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.

#### <답 변>

##### ○ 이현용 소방안전본부장

- 대상을 인천시민으로 한 것은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여 악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며, 제도가 남용될 수 있음.
- 대상민원에 비하여 현저한 인원 부족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등 시민의 힘을 이용하는 것임. 신고포상금 조례 관련 지속적인 홍보로 지금은 인식이 많이 되고 있음.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윤지상, 김소림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5명)

## 7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,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한다.

1.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
2. 용접, 쇠파이프,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
3. 방화구획에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
4. 임의구획으로 창이 없는 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
5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시장)이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.

**제3조(신고방법 등)** ① 인천광역시 주민(주민등록 등본상)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.

② 신고는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·우편·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.

1. 신고인의 성명·주소와 전화번호
2. 위반대상의 업소명과 주소 또는 위치
3. 신고내용 및 증명자료

**제4조(포상금 지급 기준)** ① 제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.

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한다.

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**제5조(포상금 지급 제외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
2.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경우
3.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·부당하게 신고한 경우
4.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
5.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

제6조(신고인의 보호)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금의 환수)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. 이 경우,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